

제106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4. 4. 15.(서면)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106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과업의 개요 바. 과업 수행기간 '(1) 설계용역 완료 후에는 공공건축 설계 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용 추가
-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등 가. 관련법령 및 기준 '⑰전기 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포함)' 으로 수정
-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다음 내용 반영할 것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구조 분야 "2) 구조계획"에서 "나) 경제적인 구조[*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및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등 최신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로 내용 변경
- 3.15.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사. 조경분야에 아래내용 추가
 - (1) 수종 선정 시 계절감을 고려하고 자생수종과 미세먼지 저감수종으로 선정, 다층구조로 식재
 - (2) 동선 주변의 식재공간은 배수를 위해 LID기법 적용 바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p>과업내용서</p> <p>1. 1.1 과업의 개요</p> <p>바. 과업 수행기간</p> <p>(1) 내용 추가 설계용역 완료 후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p> <p>2. 1.3 설계용역 일반사항</p> <p>라. 설계변경조건</p> <p>(1) 내용 추가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p> <p>아.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p> <p>(1) 내용 변경 및 삭제</p> <p>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p> <p>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야 한다.</p> <p>3. 2.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p> <p>2). 설계VE검토내용</p> <p>(1)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설계예산서의 도서 간 일치 여부 및 공사원가 적정성 등 <p>4. 3.1 일반사항 10), 3.10 평면계획 12)</p> <p>(1) 내용변경 관리등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BF인증기준 삭제)</p> <p>5. 3.11 친환경계획</p> <p>(1) 내용수정 건축물에너지효율 1+ (사유 : 1++는 비용 증가로 실현 어려움)</p> <p>6. 3.12 재료 및 색상계획</p> <p>(1) 내용추가 각종 마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3월 28 일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과업내용서 1.1 과업의 범위 “마. 과업범위”중 “2)용역 범위“ 관련 내용추가</p> <p>(1) ”나)실시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 작성“ 내용중 토목 내용 추가</p> <p style="padding-left: 20px;">- ”- 기계·전기·정보통신·건축·토목·소방분야 세부 기준 및 성능보증 검토, 분야 세부설계“</p> <p>2. 과업내용서 1.3 설계용역 일반사항 “차. 설계 안정성 검토”관련 내용 보완</p> <p>(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2조에 따라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에 관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과업내용서 1.14 발주청의 제공자료 중 ”- 측량 및 지반·지질조사 결과“는 발주처가 별도 실시하여 제공하므로 아래의 내용 수정 필요</p> <p>(1) 2.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다. 중간설계 제출 시“ 서류중에 ”2)지질조사 보고서 2부“는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해야 함.</p> <p>4. 과업내용서 3.2 설계도서 표기 “3)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추가</p> <p>(1) ”나)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내용중 ”토목“ 내용 추가</p>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5. 과업내용서 3.15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나. 토목 분야”중 “1)일반 사항” 내용중 지하매설물도 관련 내용 추가</p> <p>(1) ”라) 지하매설물 도면에는 유관기관 협의시 참고하도록 지하매설물별 관리기관명, 관리기관 연락처 등을 표현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p> <p>6. 과업내용서 3.15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나. 토목 분야“중 ”2)토공 및 흙막이 설계“ 내용중 흙막이 설계를 위한 구조계산서의 지반설계 정수는 인근지역 설계사례도 조사하여 참고하여야 하므로 수정 필요</p> <p>(1)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인근지역 설계사례 분석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내용 수정</p> <p>7. 과업내용서 3.15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나. 토목 분야“중 ”2)토공 및 흙막이 설계“ 관련 다음의 내용 보완 및 추가</p> <p>(1) ”아)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토질 및 지질분야 또는 토목 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관련분야(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p> <p>(2) ”자) 흙막이 안정검토는 굴착 시 과굴착, 해체시 과다해체가 없도록 굴착 및 해체 순서를 정하여 각 굴착 및 해체 단계에 대하여 안정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굴착 및 해체순서도를 작성하여 토목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p> <p>(3) ”차) 흙막이 안정검토시 설계지하수위 및 단계별 굴착깊이 등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예측하고, 완</p>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공 후 지하수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p> <p>(4) ”카) 흠막이 안정검토시 국가지하수관측망 및 보조지하수관측망 수위변화 자료, 해당지역 강우강도를 고려한 수위변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측으로 설계지하수위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p> <p>(5) ”타) 흠막이 설계에 대한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흠막이 도면에는 지하매설물도, 측량도면, 흠막이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계측계획평면도, 계측계획단면도, 암발파계획도면(필요시), 굴착중배수계획도면, 시공및해체시공순서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 추가</p> <p>(6) ”라)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흠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 보고서에의한 시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로 내용 수정</p> <p>(7) ”사) 흠막이 공법은 인접지반의 침하 및 지반변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흠막이 공법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로 내용 수정</p>	
종합의견	<p>조건부채택</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4년 4월 1일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1. p.7, p.20 등 - '계획설계'보다는 '기본설계'라는 용어 사용 2. p.16 - '경관법' 추가 3. p.17 - 나. 항목에 '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추가 4. p.25 조사내용, p.43 현장조사방법 - 주민의견수렴 절차 추가 5. p.40 조경분야에 아래내용 추가 (1) 수종 선정 시 계절감을 고려하고 자생수종과 미세먼지 저감수종으로 선정, 다층구조로 식재 (2) 동선 주변의 식재공간은 배수를 위해 LID기법 적용 바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6. p.46 마. 조경분야 - 도면에 '기본구상도' 추가, '조경면적 산출표→녹지구적도', '식수 평면계획→식재계획'으로 용어교체 7. p.52 조경분야 도면종류 - 녹지구적도, 식재계획도, 시설물 상세도, 동선 및 포장 계획도 추가 8. 'p.57 실시설계도서 작성', 'p.61 성과품 제출목록'의 설계도서명 통일할 것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24년 4월 1 일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과업내용서 p32] “2) 구조계획”에서</p> <p>(1) [기준]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 [변경요청]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p> <p>(2) [기준] 나) 경제적인 구조(*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경요청] 나) 경제적인 구조[*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및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등 최신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p> <p>(3) [기준]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확인,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변경요청] 다) 대지의 지반조사를 확인·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반에 적합한 구조와 그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2. [과업내용서 p45] “2) 구조계획서”에서</p> <p>(1) [기준]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변경요청]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기둥간격(Span), 층고, 바닥판 구조, 기초의 형식,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한 사용성 검토 등</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p>(2) [기준]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변경요청] - 구조성능 : 내구성, 내화, 차음, 진동 등</p> <p>3. [과업내용서 p45] “4) 도면종류”에서 (1) [기준]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변경요청] - 각층 구조평면도,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부제리스트 등</p> <p>4. [과업내용서 p48] “2) 구조계획서”에서 (1) [기준] - 구조계산서,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변경요청] - 구조계산서, 구조성능(내구성,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p> <p>5. [과업내용서 p49] “4) 도면종류”에서 (1) [기준]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변경요청] - 구조평면도, 각부 구조단면도 등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기준] - 각층 기둥, 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변경요청] - 각층 슬래브, 보, 기둥 등의 구조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추가요청] - 구조일반사항(최신 구조기준 적용)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4월 1일

2024. 4. 2.(화)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leewg214@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기계	<p>○ 과업 내용서 35p 다. 기계설비 분야</p> <p>2) 일반 지침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한다. =>사유 : 당현장 특성사 향공조방식의 고려는 불필요함.</p> <p>○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도 의견 없음.</p>	
종합의견	<p>(조건부채택)을 선택합니다.</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4년 3월 28일

2024. 4. 2.(화)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leewg214@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 기	1. 가. 관련법령 및 기준 ⑰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포함) ->⑰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포함) 으로 수정	P16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24년 3월 31일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 축	<p>1.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 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 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p>2. 야생조류 충돌방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 설계토록 명시하고 검토내용을 최종 성과물에 포함·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p> <p>3. 공공시설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디자인정책담당관 - 12235, '23.10.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https://ebook.seoul.go.kr/Viewer/H3H73RCSXZ0J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http://www.sudc.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setupSn=11#ids475 - 디자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전문가 풀 활용 가능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13조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포함) 이행하도록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 <p>4.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제2021-1080호, 2021. 9. 8)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명시하고,</p>	

최종성과품에 포함·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5. 작업일지의 작성 및 투입일수 기록 제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서식4)에 따른다.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6. 설계도서 작성기준 관련 아래와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건축편) 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최종 성과품 관련 아래 내용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최종 설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건축편)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8.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 한다.

-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 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9.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 ▶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 ▶ 실시설계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
-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10.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 분석 결과, 실적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산출하고,

11.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것

12. (p.4) 대지위치 표기 시 모든 지번을 함께 표기할 것

13. (p.4) 다. 과업의개요 5) 예정공사비 관련 아래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람

- 전기분야는 분리 발주하므로 공사비에서 제외 및 문구 삭제 검토
-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확인 후 과업에 해당되는 부분 명시

14. (p.7) 과업기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할 것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제3항

15. (p.8) '1.3 설계용역 일반사항'에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항목을 추가하시기 바람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설계VE 검토 이후 / 신기술, 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에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p15) 1.16.과업내용 변경 1)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기 바람

-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17. (p16) '1.17.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등 '가. 관련법령 및 기준' (p18)'다.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할 것

- 4) 공사시방서 작성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서울시 설계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KDS)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18. (p.19)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가.착수 시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9. (p.19) 설계진행시 제출서류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건축편)에 의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① 각 관련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색채 등)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 ②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명단 (별첨1)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한다.
- ③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정보, 통신분야설계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⑥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a. 상기 ③,④,⑤,⑥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하여 유자격 등록자 또는 개설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⑦ 목표예산(공사비:00,000백만원)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a.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 c.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 d. 부실설계 및 향후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

	<p>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p> <p>⑧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p>20. (p.24) 2.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 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2023.2.)을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자료실→건설기술→지침/방침 참조) <p>21. (p.25)과업내용서(2.6 조사업무, 나. 조사내용 1) 현지답사에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답사 및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안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p>22. (p.26) 3.1일반사항에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4%이상 계획한다 <p>23. 작성서식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계, 책임기술자선임계,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예시), 보안각서,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공중간의 업무분장, 설계개요서, 건설공사(설계,시공)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등 	
기 계	<p>24. 과업내용서(아. 현장조사방법 / 나)현장조사) p43에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답사 및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안법 제 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p>25. 과업내용서(1.17.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 가.관련법령 및 기준)에 다음 관련 법령을 추가할 것</p> <p>⑤1중대재해처벌법</p>	

	<p>26. 과업내용서(3.15.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 다. 기계설비분야 / 1)일반사항 p35)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자재센터 건립 부지의 외적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전 기 · 통 신 · 소 방</p>	<p>27. 전기 분야 설계용역이 분리발주 대상인지 검토할 것</p> <p>28. 과업내용서의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은 수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16) ‘가. 관련법령 및 기준 - (17)’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폐지)’을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수정 <p>29. 과업내용서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51) ‘5.5. 전기분야 - 2) 계산서’에 ‘접지설비 계산서’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토 목</p>	<p>30.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신기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추가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 또는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 반영의 경우 필요 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및 선정 보고서 발주기관에 제출) <p>31.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일 경우 설계VE 검토, 설계심의 등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련 내용을 수록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VE 검토 시기 :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구분없이 1회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신기술,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 ○ 설계심의 시기 : 기본설계 완료시점(설계VE 검토 이후 / 신기술, 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시기 : 공사발주 전, 실시설계 완료 단계 	

<p>조경</p>	<p>32. 제3장 설계 지침 3.15.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사. 조경 분야에 아래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람.(p40)</p> <p>가.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한다.</p> <p>1)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2)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p> <p>나.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p> <p>다.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p>	
-----------	--	--

2024년 4월 3일